



기조발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이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이슈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1. 논의의 발단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최신 국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취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3조 2항에서 “동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자원 이용에 관한 다른 국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이 이러한 국제 조약에 근거해 부여받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¹⁾ 즉,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하지만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즉,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국제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 혹은

1_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rticle3, Paragraph2.

이와 관련한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 증진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피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향후 설립될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크센터(이하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주요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 과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선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로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²⁾ 정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창작물에 대한 적법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³⁾

물론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범위와 보호 장치의 존재 여부도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종종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⁴⁾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정보가 전파되는 시대에는 누군가 오랫동안 공들여 성취한 결과물이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히 정보와 네트워크를 중점기능으로 하고 있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풀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2_ Intellectual property, very broadly, means the legal rights which result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fields (WIPO,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p.3).

3_ WIPO, 상계서 p.3.

4_ 오윤석,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법학연구』 제 14권 제 1호, 충남대학교, 2003, p.494.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국내외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향후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II.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오랜 기간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전문가 혹은 이해 당사국 간의 의견 합의가 힘들어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다.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까지의 배경에는 유네스코 UNESC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간의 민간전승표현물 보호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유네스코는 1971년에 ‘민간전승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설립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의 적용 측면에서 민간전승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⁵⁾

유네스코는 1982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불법 및 여타 편파적인 조치를 방지하는 민간전승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가법 모델 규정’을 마련하고, 1984년에는 이 모델 법률에 기초한 국제규약 개발을 시도하였다.⁶⁾ 그러나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 역시 시기상조로 결국 국제적인 법적 규범을 만드는 작업은 다시 실패로 끝났다.

이후 유네스코는 1985년부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지적재산권 논의를 접어 둔 채 전적으로 국제적 접근만을 시도하였으며, 1989년에는 ‘전통문화 및 민간전승 보호를 위한 권고안’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는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유네스코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세계유산과 더불어 목록 작성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1년부터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5) 아이카와 노리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정에 관한 역사적 개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무지엄 인터네셔널」, 제221, 222호, 한국어판 특집호, 2004, p.83.

6) 상게서.

및 민간전승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 속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지식의 체계와 예술적 표현물들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지적재산권 형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유네스코는 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고 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방향을 선화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적 재산의 공적 영역으로서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제 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민간전승물(*folklore*)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어 정부간위원회 명칭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⁷⁾에 대한 논의를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3조 2항은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관계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이러한 조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계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훼손 혹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하루속히 보호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 지적재산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국제적 규범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네스코 193개국 회원국 중 2010년 10월 현재 협약 가입국 수가 131개국이나 된다. 2003년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고 2006년에 발효된 이래 10년이 되기 전에 유네스코 회원국 중 67%의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열띤 논의와 함께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또한 지난 9년간 16회에 걸쳐서 유전자원, 전통지

7_ 제 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민간전승(*folklore*)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어 정부간위원회 명칭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오기석,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아태 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구 활동을 위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2009, p.16).

식 및 민간전승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 초안을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유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Documenting}, 녹화^{Recording}, 디지털화^{Digitising}에 관한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사 연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일련의 노력들은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로 불리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첩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보호 활동이며 결국 상호간의 공조 내지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보호 노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그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영역이다.

Ⅲ. 무형문화유산 보호 : 새로운 접근과 2003년 협약

1.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금세기 들어 각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자원 활용과 문화자본 육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기초에서 각 국가 고유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유산에 관한 기존의 개념은 사실상 인류학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통념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 간 양분화를 낳았는데, 즉 문화를 고급 문화^{high culture}와 그렇지 않은 문화로 분리하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유산은 문명사회의 유산으로, 그리고 과거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유산을 원시사회의 유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또한 작품의 형식과 크기를 중시하는 모뉴멘탈리즘^{monumentalism}은 유형문화유산과 아태 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무형문화유산 사이에 서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체제 이전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규범에 영향을 끼쳤기 때

문에 그간 수립된 국제규범은 주로 유형 유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국제규범에서 다루어진 문화유산의 개념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비물질(non-material)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까지도 두루 포함하게 되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 원천으로까지 의미가 발전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 간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과 함께 보호 수단의 강화가 이뤄져 왔으나,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과 2006년 동 협약 발효를 통해, 오랜 과제였던 유·무형유산 간 보호 정책 상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문화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유형문화유산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 무형문화유산 범주와 협약 운영상의 특징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서른 번째 가입국인 루마니아(2006년 4월 20일)가 협약에 가입하면서 채택된 지 3년 만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를 구전 전승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의례 및 축제(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공예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⁸⁾)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 문화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 활동으로서 확인(identification), 기록(documentation), 조사(research), 보존(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증진(enhancement), 전승(transmission), 유산의 활성화(revitalization) 등 유산의 생명력(vi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⁹⁾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본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은 무형유

8_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rticle 2, Paragraph 2.

9_ Ibid, Article 2, Paragraph 3.

산이 공동체와 집단, 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 및 전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전승 주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의 삶에 이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미명하에 공동체가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는 전통·역사·지방문화 이상을 의미하며, 또한 기·예능을 넘어서서 그것과 관련된 공예품, 장소, 관습까지도 포함한다. 넷째, 협약 내에서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을 고려한다”고 밝힘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시 인권문제에도 함께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 협약은 기나긴 국제적 논의와 제안을 집대성한 포괄적인 국제규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무형문화유산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특이점을 들 수 있다. 즉, 1972년 협약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세계유산 목록 등재 기준으로 삼은 반면, 2003년 협약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공동체와 연행자가 유산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유산의 ‘진정성 *authenticity*’ 아닌 ‘생명력 *viability*’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히 ‘유산 목록 등재 *listing*’가 아닌 ‘모범사례 *Best Practice*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IV.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 그 다양한 가치(價値) 분석

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논리적 근거에 있어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핵심적인 위치에 선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과 관점에 따라 특정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상이 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문화적 산물에 의미를 탐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되어 왔다.

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이론과 실제에서는 공익이나 공공가치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번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익의 관점 보다는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산의 ‘가치’는 사람들이 유산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데 동인 *motif*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은 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정책적 및 재정 지원을 정

당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¹⁰⁾

우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법률상 문화재의 보호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¹⁾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확인¹²⁾하고 있다. 무형유산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열거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는 일반의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서는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적 진화와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번 발표의 키워드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설명이 필요하므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산의 내재적 가치, 파생적 가치 그리고 제도적 가치로 분류한 문화유산 가치 이론의 틀¹³⁾을 활용해 기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환경에서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내재적 가치는 해당 문화유산의 본질이나 특성 자체가 주는 가치로, 대체로 전문가나 개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상징적, 미학적, 통합적 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형문화유산은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전승해 온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인류가 미적 성취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무형의 기·예능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아울러,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상호 밀접한 의존 관계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 통합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10_ Jelka Pirkobic,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f Slovenia.」

11_ 문화재보호법 제 2조 ①.

12_ 문화재보호법 제 2조 ①의 2.

13_ Jelka Pirkovic의 발표문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s one of Faro requirements」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내재적 가치, 파생적 가치, 제도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파생적 가치는 유산의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나 혜택에 해당하는 가치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육 및 학술적, 환경적, 오락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무형문화유산은 그 활용을 통해 관광 및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자원으로써 잠재적 경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을 강화해 주며 정신적 세계나 종교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1989년 '전통문화 및 민간전승에 대한 권고안'¹⁴⁾에서도 전통문화가 다른 민족과 사회 계층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인류의 보편적 유산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자원이 되며 각 사회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미래 세대에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도 · 정책적 가치는 각 사회발전을 위한 과제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 및 정책 분야에서 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민주적 가치, 문화다양성 및 창의성 기여 가치, 발전 가치, 정체성과 지식 보급 가치¹⁵⁾를 들 수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 수단으로 문화적 다양성 제고는 물론이고 인류의 창의성 진작에 기여¹⁶⁾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와 집단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며 공동체, 집단, 개인의 상호 존중과 인권 존중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 민주적 가치를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¹⁷⁾

상기와 같이 문화 분야의 가치이론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내재적, 파생적 그리고 제도 · 정책적 가치 분석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한 양상의 잠재적 가치가 지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보호를 위해서 각 국가의 제도 및 정책적 의지만만 아니라 해당 보유자와 공동체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 증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14_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5 November 1989.

15_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Faro, 27.X.2005.

16_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문내용.

17_ 상기 협약 제 2조의 1.

V.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상 지적재산권 논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약으로는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무형문화유산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하며,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¹⁸⁾

무형문화유산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과연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에 의해 전승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공동체와 집단(개인 포함)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인류의 자산이며,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승 주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직접 결부된 이들이 바로 이 전승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가 주로 공동체라는 사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각 지역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다. 이는 효과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발적인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다.

특히 밴들랜드는 협약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관련 자료들을 공적 영역의 것으로 만들

18_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공동체·집단·개인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수 있다(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당사국의 의무사항¹⁹⁾으로 된 것은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공동체의 이익에는 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²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의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 역시 공동체의 지적재산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성²¹⁾을 보장하는 것은 대중의 인식 제고와 직결된 문제이다. 물론 협약에서는 관례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바탕이 될 때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²²⁾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성, 가공, 보급을 위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태 지역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을 중점기능으로 하고 있는 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서명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문에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 지적재산권과 관계가 있는 조항은 제 7조로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급을 위해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데이터 활용, 기록 및 정보 자료의 생산 및 출판, 기록 및 정보 자료에 포함된 무형유산 실행자 및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_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13조 4항 3호).

20_ 벤트 밴트랜드,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 도전과 미래의 전망」,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p.75.

21_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13조 4항 2호).

22_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3조).

VI.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까지의 배경에는 유네스코 *UNESC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간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지적재산권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활동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현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이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도 신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전자원을 포함한 이들 새로운 개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정보 및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중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태무형유산센터로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주제는 중요한 전략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한·유네스코 협정에 따라 익년부터 유네스코 전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문가 회의를 준비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특히 다음과 같이 제기해 보았다.

- 1)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 혹은 전통문화표현물 등의 개념,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혹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국내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과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와의 관계를 조명해서 이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을 정립하는 이론 개발과 추진 과제의 설정이 요구된다.

- 2) 무형문화유산을 아우를 수 있는 전통자원권 *Traditional Resources Rights*²³⁾ 과 같은 포괄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지적재산권법 체제의 내재적 한계의 극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취할 것인가? 머지않은 장래에 자의 또는 타의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의 수정 내지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 *sui generis system*의 도입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가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작업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기존의 목록 작성에 대해 무형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서 주목해야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가 공적公的이고 집단적集團的 권리 보다 사적私的이자 개인적個人的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대를 걸쳐 공공의 유산으로 전승되는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 4)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지정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속성상 끊임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의 과정에서 수많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들에 대한 공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5)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부 개인들 혹은 방송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초상권 침해와 무책임한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를 들 수 있다.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촬영 기자재의 취급이 쉬워지고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부 개인이나 매체의 활동이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동체, 집단 혹은 경우에 따라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규

23_ Darrell A. Posey and Graham Dutfiel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Towar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1996.

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여 그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발제에서 제기된 이슈와 함께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두루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특히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과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증진을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주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